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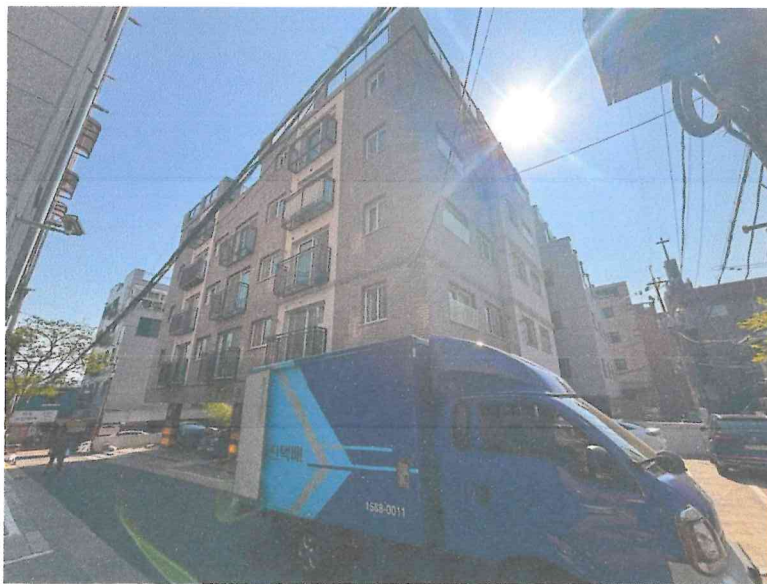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 명 : 김정훈 소유물건(2025타경9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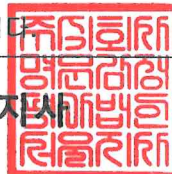
의뢰인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성희

감정서번호 : m12-257042504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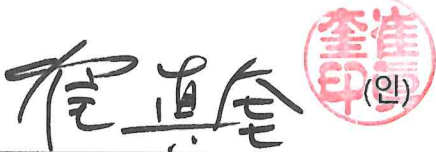
(주)명문감정평가법인 서울지사



TEL. 02-6672-1369 FAX. 02-6672-1361


(구분건물) 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주)명문감정평가법인 서울지사 감 정 평 가 사
 지사장 신순숙  최진규 

감정평가액	이억사천칠백만원정 (₩247,000,000.-)				
의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성희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김정훈 (2025타경9742)	감정평가조건	-		
물건목록 표시근거	귀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 04. 29	2025. 04. 29	2025. 04. 30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별	면적 또는 수량(m ²)	종 별	면적 또는 수량(m ²)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세대	구분건물	1세대	- 247,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감 정 평 가 사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4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 주택)('금강파크빌' 제2층 제203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경매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 건임.

II. 감정평가의 기준 및 감정평가조건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4월 29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4월 29일에 실시하였음.

4. 감정평가의 조건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III. 기타 참고사항


1. 기타 참고사항

- ① 본건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면을 참고하여 외부관찰에 의하여 작성하였고 설비 등은 기본사양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이용상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람.
- ②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물건으로 일반거래 관행상 구분감정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행한 토지·건물 배분비율표에 의거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③ 대상물건의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상 등록된 건축물현황도면 및 현황 표기부분 등에 의거하여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개요

1.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건물의 개요

소재지·건물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22-103, 1022-104, 1022-105 금강파크빌 제2층 제2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0길 15-5 (독산동)			
	주용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제2종근린생활 시설 1호 / 19세대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사용승인	2020.07.27		
	건물규모	층수	지상 5층	
		연면적	712.16 m ²	
	비고	-		

2. 각 호별 상세 개요

일련 번호	층/호수	용도	건물면적(m ²)			대지권 (m ²)	비고 (전용률 (%))
			전유	공용	분양		
가	2/203	다세대주택	29.23	5.35	34.58	21.19	84.53

※ 분양면적은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면적으로, 시장의 통상적인 분양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이하 동일)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서, ①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 ②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 ③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분건물 (집합건물)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등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로 적용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제1항에서는 대상물건별로 정한 주된 평가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서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서는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합리성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본 감정평가의 평가대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인 구분건물 (집합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 등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관련 규정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시산가액을 산정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물건의 특성 (주거용으로 이용 중임)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익방식에 의한 수익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를 생략하고,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사례 등 참고가격 자료를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II.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함.

$$\text{감정평가액} = \text{거래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치} \times \text{시점수정치} \times \text{가치형성요인비교치}$$

2. 감정평가시 고려사항

없음.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1)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층/호	용도	면적(m ²)		거래가액(원) (원/전유m ²)	거래시점 (사용승인)	비고
				전유	분양			
#1	독산동 000	5/000	다세대주택	29.92	35.91	250,000,000 (@8,355,615)	2024.09.06 (2016.12.27)	-
#2	독산동 000	3/000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27.83	32.03	238,000,000 (@8,551,922)	2024.01.25 (2015.11.26)	-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2) 비교거래사례의 선정

본건과 동일·유사한 집합건축물 내의 거래사례로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1로 선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3) 사정보정

의견	사정보정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	1.000

(4) 시점수정

■ 비교 거래사례#1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유형별 매매가격지수 중 본건과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매매가격지수(아래 표 참조)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함.

시군구	상승률 (시점수정치)	산출근거			
		거래시점 / 기준시점		2024.09.06/ 2025.04.29	
서울 강남지역 서남권 연립다세대	0.414% (1.00414)	매매가격 지수	사례거래 당시 지수	2024.08	96.7
			기준시점 당시 지수	2025.03	97.1
		산식		$1 + (97.1 - 96.7) / 96.7$ ≈ 1.00414	

※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의 각 직전 달의 매매가격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되, 해당월 지수가 미발표시 가장 최근 발표된 지수를 연장 적용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5) 가치형성요인 비교

■ 주거용[일련번호 가] / 비교사례 #1]

조 건	세부항목(주거용)	격차율	비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1.03	본건은 사례대비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등에서 우세함.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0.98	본건은 사례대비 층별 효용등에서 열세함.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본건과 사례가 대체로 대등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누계)		1.009	-

(6)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결정

본 건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시산가액(단가) 산정						산정가액 (원)	시산가액 (원)
층/호수	전유 (사정 면적(m ²))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산정단가 (원/전유m ²)		
		일련 번호	단가 (원/전유m ²)						
2/203	29.23	#1	8,355,614	1.000	1.00414	1.009	8,465,719	247,452,966	247,000,000

※시산가액(원)은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IV. 참고가격자료

1. 유사 부동산의 가격수준

구 분	주위환경	도로조건	거래수준(원/전유㎡)	용도지역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일반 주택지대	세각(가)	7,800,000-8,900,000	2종일주

본건 지역의 거래수준은 보합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2. 본건 평가사례

본건의 최근 3년 이내의 평가사례는 포착되지 아니함.

3. 인근 평가사례

일련 번호	소재지 층/호	용도	면적(㎡)		감정평가액(원) (원/전유㎡)	기준시점 (사용승인)	평가 목적
			전유	분양			
(1)	독산동000 2/000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27.59	32.63	245,000,000	2025.03.28 (2020.07.27)	법원경매
					(@8,880,029)		
(2)	독산동000 4/000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29.89	35.35	232,000,000	2024.11.20 (2020.07.27)	법원경매
					(@7,761,793)		

※ 분양면적은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임.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4. 경매동향

용도별	서울특별시 전체 2024년 04월 ~ 2025년 03월					
구 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다세대	1,120,249,990,087	909,865,000,817	81.2	14,500	3,895	26.9

용도별	서울 금천구 2024년 04월 ~ 2025년 03월					
구 분	낙찰가			낙찰건		
	총감정가	총낙찰가	율(%)	총건수	낙찰건수	율(%)
다세대	77,775,312,000	62,758,381,622	80.7	947	276	29.1

(출처 : 인포케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본건 평가 목적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평가대상		면적		감정평가액(원)
		전유면적(m ²)	대지권(m ²)	
가	제2층 제203호	29.23	21.19	247,000,000
합계		29.23	21.19	247,000,000

결정의견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낙찰가율 통계분석 등 참고가격자료를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	--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

건 물 명		금강파크빌 제2층 제203호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용 도	구 조 및 용도지역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0길 15-5	1022-103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제2종 근린 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61.27			
		1022-104		평스래브지붕				
		1022-105		5층				
		금강 파크빌		1층				
				2층 ~ 4층 각				
1	동 소	1022-103	대	옥탑층 (연면적제외)	142.8			
2	동 소	1022-104	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139.1			
3	동 소	1022-105	대	제2종일반주거지역	142.5			
가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층 제203호	29.23	29.23	247,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1,2,3 소유권대지권	21.19	21.19		
					424.4x----- 424.4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98,800,000 148,200,000	
	합 계						₩247,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독산4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며 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래브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 : 석재 및 벽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4) 이용상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방2, 화장실1)으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시설, 보일러에 의한 개별바닥 난방설비 등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3필지 일단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p>(1) 위치 및 주위환경 (5) 설비내역 (8) 토지이용계획 및</p>	<p>(2) 교통상황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9) 공부와의 차이</p>	<p>(3) 건물의 구조 (7) 인접 도로상태 등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p>	<p>(4) 이용상태</p>
--	---	--	-----------------

(7) 인접 도로상태등

북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022-103, 1022-104 공히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7-12-19)(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7-12-19)(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1022-105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공항시설법>, 절대보호구역(2017-12-19)(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94m(지반+건축+옥탑 등),육군수도방위사령부(02-524-3313)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임.

(9)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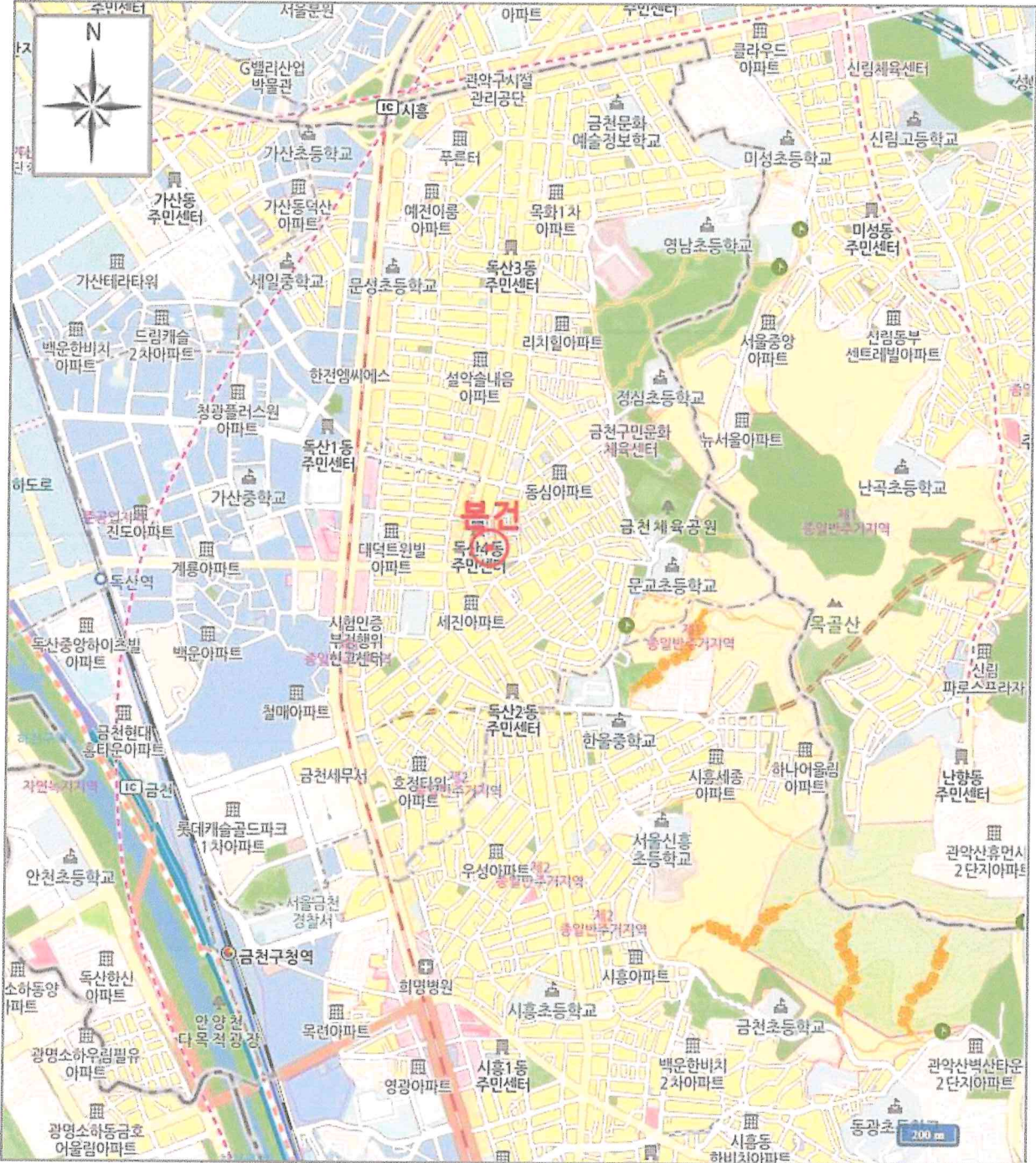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22-103외 금강파크빌 제2층 제203호



[범례]

■ 본 건

■ 평가사레

■ 거래사레

상세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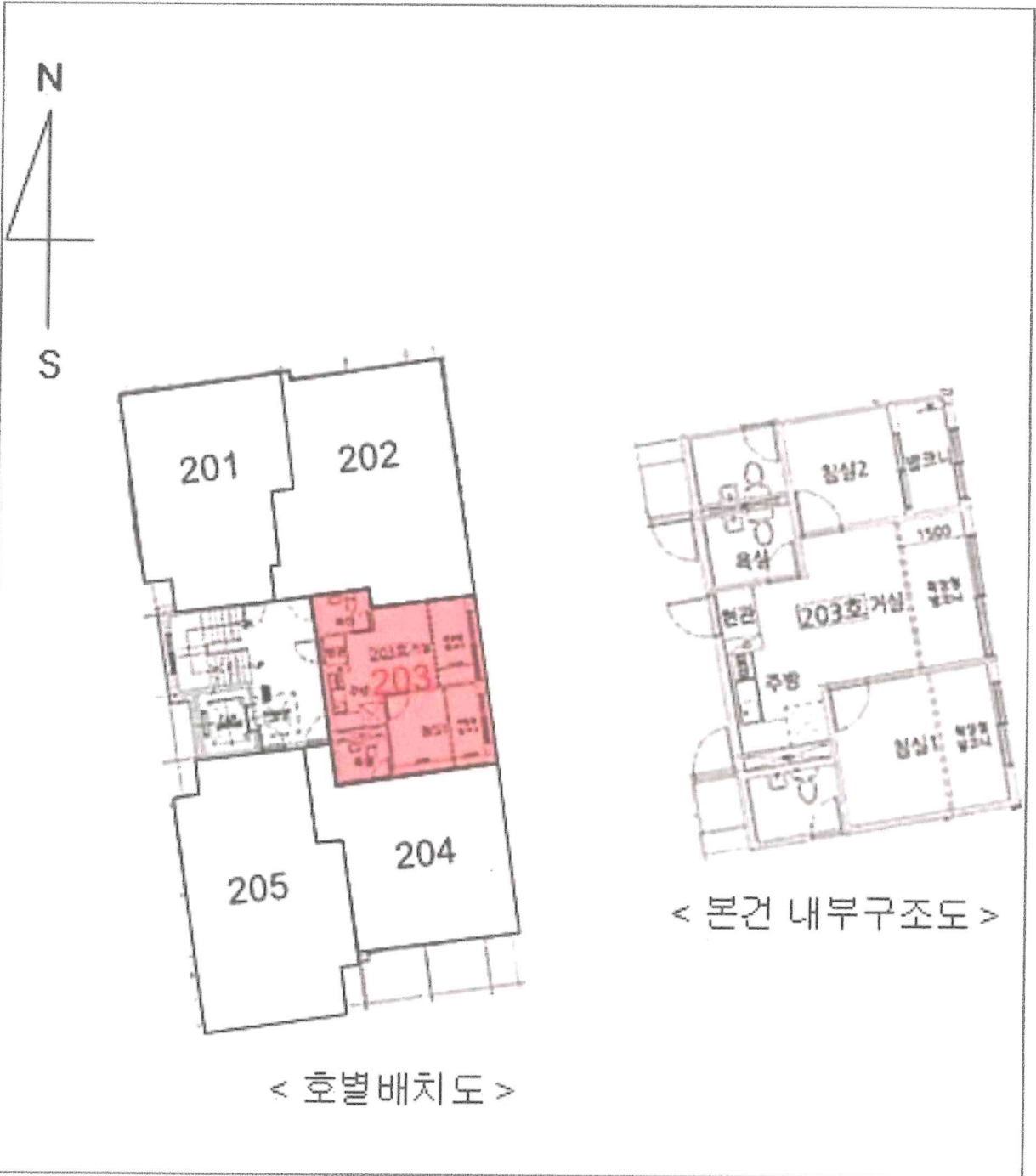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22-103외 금강파크빌 제2층 제203호



- [범례]
- 본 건
- 평가사레
- 거래사레

내부구조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22-103외 금강파크빌 제2층 제203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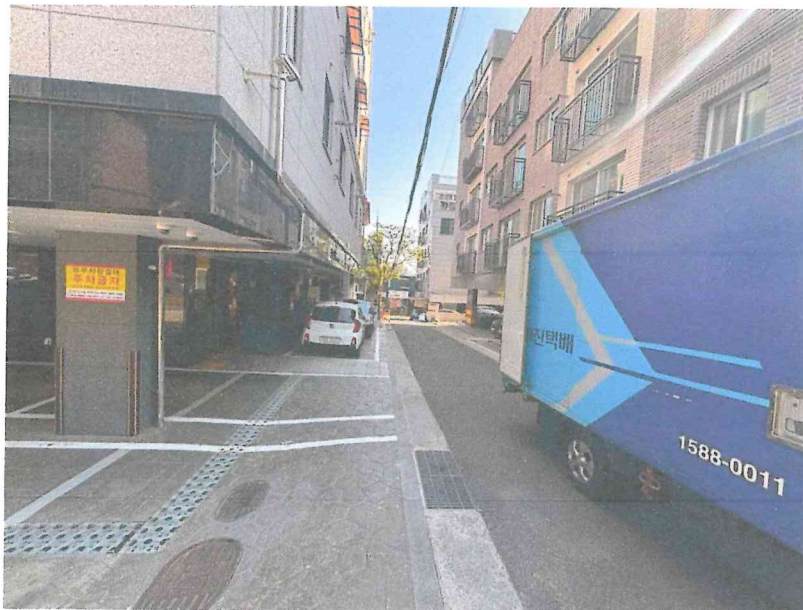


사 진 용 지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22-103외 금강파크빌 제2층 제203호
-----	---



<본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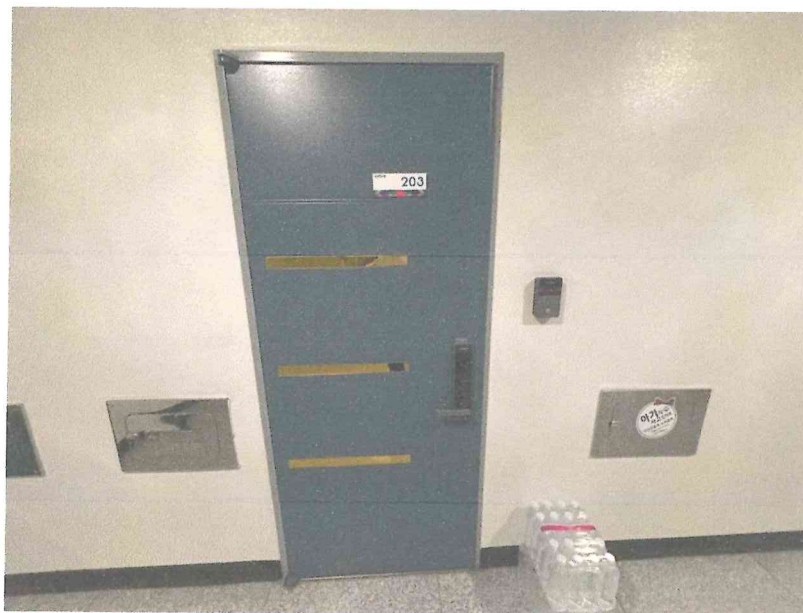
<본건 인접도로>

사 진 용 지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22-103외 금강파크빌 제2층 제203호
-----	---



<무인택배함>



<본건 현관문>